

현대카드 상품권 신용판매특약서

상품권 신용판매 특약서

현대카드 보관용

※ 가맹점번호 : -

현대카드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상품권의 신용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계약에서 "을"이라 함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 또는 상품권발행자와 상품권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갑의 회원" 이라 함은 갑의 개인신용카드회원, 법인신용카드회원을 말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본 특약의 적용범위는 갑의 회원에게 신용카드(제휴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매출분에 한한다.
② "을"이 상품권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중 성질이 맞지 않는 사항은 적용이 없다. 다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상품권발행자와 체결한 상품권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제출하기로 한다.

제 3 조 (영업행위 통보)

- ① 을은 상품권의 발행 여부와 발행 판매하는 상품권의 종류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이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통보사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통보하거나 변경된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상품권의 판매)

- ① 을은 갑의 회원이 을의 매장에서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본 특약 및 가맹규약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회원이 을의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권에 대하여 매출취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취소처리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의 취소 요청 시 반드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래의 매출전표를 회원에게 반환하거나 갑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을은 갑의 회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본 특약에 의한 가맹점번호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개인신용카드회원의 구입한도)

"갑"은 개인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제 6 조 (신용판매 한도액)

본 특약에 의한 "을"의 상품권 판매 한도액은 원으로 하며 할부 가능 여부 및 할부 개월수는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해 운영한다.

제 7 조 (손해배상)

일방이 본 특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당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본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9 조 (유효기간)

본 특약은 특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0 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갑과 을은 본 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서면통보로써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특약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주요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파산, 화의,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개시 등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본 특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갑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6.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발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거래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더 이상의 거래가 곤란한 것으로 갑이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이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갑은 제2항의 경우에 특약해지가 아닌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금지급주기의 연장,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향 조정, 일정기간 이상의 대금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특약의 해석)

본 특약은 갑의 가맹점규약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가맹점규약을 준용하고 그 외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관할법원)

본 특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을의 주소지 또는 갑의 본·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상기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며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현대카드	(을) 가맹점		
	주소		
	상호		
	대표자		
인/서명		인/서명	

상품권 신용판매 특약서

가맹점용

※ 가맹점번호 : -

현대카드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품권의 신용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계약에서 "을"이라 함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 또는 상품권발행자와 상품권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갑의 회원"이라 함은 갑의 개인신용카드회원, 법인신용카드회원을 말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본 특약의 적용범위는 갑의 회원에게 신용카드(제휴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매출분에 한한다.
② "을"이 상품권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중 성질이 맞지 않는 사항은 적용이 없다. 다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상품권발행자와 체결한 상품권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제출하기로 한다.

제 3 조 (영업행위 통보)

- ① 을은 상품권의 발행 여부와 발행 판매하는 상품권의 종류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이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통보사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통보하거나 변경된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상품권의 판매)

- ① 을은 갑의 회원이 을의 매장에서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본 특약 및 가맹규약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회원이 을의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권에 대하여 매출취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취소처리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의 취소 요청 시 반드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래의 매출전표를 회원에게 반환하거나 갑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을은 갑의 회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본 특약에 의한 가맹점번호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개인신용카드회원의 구입한도)

"갑"은 개인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제 6 조 (신용판매 한도액)

본 특약에 의한 "을"의 상품권 판매 한도액은 원으로 하며 할부 가능 여부 및 할부 개월수는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해 운영한다.

제 7 조 (손해배상)

일방이 본 특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당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본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9 조 (유효기간)

본 특약은 특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0 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갑과 을은 본 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서면통보로써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특약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주요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파산, 화의,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개시 등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본 특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갑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6.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발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거래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더 이상의 거래가 곤란한 것으로 갑이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이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갑은 제2항의 경우에 특약해지가 아닌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금지급주기의 연장,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향 조정, 일정기간 이상의 대금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특약의 해석)

본 특약은 갑의 가맹점규약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가맹점규약을 준용하고 그 외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관할법원)

본 특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을의 주소지 또는 갑의 본·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상기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며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현대카드	(을) 가맹점		
	주소		
	상호		
	대표자		
인/서명		인/서명	

